



# 캘리포니아 법은 직장 내에서의 차별과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

캘리포니아의 공정 고용 및 주택부 (DFEH: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) 실제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인해 또는 그렇게 간주됨으로써 고용시 받게 되는 불법적인 차별과 괴롭힘으로부터 귀하를 보호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:

- 조상
- 연령 (40세 이상)
- 피부색
- 장애 (HIV 및 AIDS 를 포함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장애)
- 유전자 정보
- 성 정체성 및 성 표현
- 결혼 여부
- 건강 상태 (유전적 특징, 암 또는 암 관련 기록 또는 병력)
- 군인 및 참전 신분
- 국적 (언어 사용 및 연방법이 인정하는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포함)
- 인종
- 종교 (종교적 의복 및 차림새 포함)
- 성별 (임신, 출산, 수유 및/또는 관련 건강 상태 포함)
- 성적 취향

##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령 (정부 법령 섹션 12900 에서 12996까지) 및 관련 시행령 (캘리포니아 법령, 타이틀 2, 섹션 11000 에서 11141까지):

- ① 직원, 신청자, 무급 인턴, 자원 봉사자 및 독립적인 계약자에 대한 어느 누구의 괴롭힘도 금지하며 고용자는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. 이는 성적 괴롭힘, 성별에 관한 괴롭힘, 임신, 출산, 수유 및/또는 관련 건강 상태와 관련된 괴롭힘 뿐만 아니라 상기에 기술된 이외의 다른 종류의 괴롭힘에 대한 금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.
- ② 모든 고용자는 직원 각 개인에게 성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상황, 불법성 및 법적 해결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 고용자는 캘리포니아 정부령 섹션 12950 에 나타나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발행물을 직접 출판하거나, 또는 DFEH 안내 책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

- ③ 직원이 50인 이상인 고용주와 모든 공공 기관은 모든 슈퍼바이저에게 성별 인식, 성별 표현 그리고 성적 지향에 근거한 성희롱, 모욕적 행위 및 괴롭힘 방지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합니다.
- ④ 고용자는 사업장에서 꼭 정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언어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서는 안됩니다. 고용자는 직원에게 언어 사용의 제한 그리고 이를 위반시의 결과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. 또한 고용자는 지원자나 직원을 소지하고 있는 운전 면허증이 미 연방법에 의해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- ⑤ 고용자는 개인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일부로서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종교적 의복, 장신구, 그리고 머리 모양, 얼굴이나 몸의 모발 등을 포함하여, 직원, 무급 인턴 또는 지원자의 종교적 신념 및 관습 등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여야 합니다.
- ⑥ 고용자는 장애를 가진 직원이나 지원자가 일의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합리적으로

수용하여야 합니다.

- ⑦ 지원자, 무급 인턴, 자원 봉사자 및 직원은 법이 요구하는 동등한 고용을 행하지 않은 고용자, 직업 소개소 또는 노동 조합에 대하여 DFEH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⑧ 어떠한 지원자, 무급 인턴, 또는 직원도 채용, 진급, 일의 배정, 해고, 또는 고용의 기간, 조건, 또는 특권에 있어 차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
- ⑨ 직원, 직업 소개소 및 노동 조합은 지원서, 인사 기록, 그리고 고용 추천 기록을 최소 2년 동안은 보관해야 합니다.
- ⑩ 고용자는 임신, 출산 또는 관련된 건강상의 조건으로 인해 장애가 생긴 고용인에게 4개월 이하의 휴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- ⑪ 고용자는 임신, 출산 또는 관련된 건강상의 상태와 관련하여, 의료인의 조언에 의해 고용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수용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.
- ⑫ 직원이 20인 이상인 고용주는 요건이 되는 직원들에게 출산을 위해 또는 입양이나 위탁 자녀의 배치를 위해 12개월의 기간 중 12주 이하의 휴가를 허락하여야 하며; 또한 직원이 50인 이상인 고용주는 직원 개인의 건강 상태가 심각한 경우, 또는 건강 상태가 심각한 부모, 배우자 또는 자녀를 위하여 12개월의 기간 동안 12주 이하의 휴가를 허락해야 합니다.

- ⑬ 직업 소개소는 모든 지원자를 공평하게 대하고, 차별적인 고용 요청은 거절하여야 하며,
- ⑭ 고용자나 직업 소개소가 고용전 차별적인 질문을 행하거나 차별적인 고용 선호도를 나타내는 구인 광고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. 노동 조합은 회원 가입이나 회원을 일에 파견할 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.
- ⑮ 불법적인 차별에 반대하는 다른 사람을 반대하거나, 보고하거나 도와 주는 사람에 대한 보복을 금지합니다.

### 불만 제기

법은 직장에서 법으로 금지된 차별이나 괴롭힘을 경험한 개인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제공합니다. 이러한 해결 방안에는 고용, 선불, 후불, 승진, 복직, 정지 명령, 전문가 증인 비용, 합리적인 변호사비 및 관련 비용, 가혹 피해 보상 및 감정적인 피해 보상 등이 포함됩니다.

지원자, 무급 인턴 및 고용인: 차별이나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믿는다면, DFEH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독립적인 계약자 및 자원 봉사자: 괴롭힘을 당했다고 믿는다면, DFEH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불만 사항은 차별/괴롭힘이 있었던 마지막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거나, 피해자의 연령이 18세 미만의 경우, 18세 생일을 맞은 후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.

서면 접수 양식을 온라인, 일반 메일, 또는 이메일 상으로 제출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경우, DFEH에서는 접수 양식을 전화로 받아 적음으로써 접수 양식 제출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며, 난청 또는 청각 장애가 있거나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릴레이 서비스 (711)를 통해서, 또는 귀하의 VRS를 통해 (800) 884-1684 (음성) 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.

약속을 원하시는 경우, 커뮤니케이션 센터 (800) 884-1684 (음성 또는 릴레이 오퍼레이터 711을 통해) 또는 (800) 700-2320 (TTY) 로 전화 하시거나 이메일 [contact.center@dfeh.ca.gov](mailto:contact.center@dfeh.ca.gov)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DFEH는 요청이 있는 경우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료를 다른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
자료를 다른 방법이나 웹페이지로 접근하고 싶으신 경우, DFEH 연락처인 (800) 884-1684 (음성 또는 릴레이 오퍼레이터 711을 통해), TTY (800) 700-2320, 또는 [center@dfeh.ca.gov](mailto:center@dfeh.ca.gov)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### 더 자세한 사항은

공정 고용 및 주택부

수신자 부담 전화  
(800) 884-1684  
TTY: (800) 700-2320  
온라인 [www.dfeh.ca.gov](http://www.dfeh.ca.gov)

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:



정부령 섹션 12950 및 캘리포니아 시행령 타이틀 2, 섹션 11013은 모든 고용자는 이 자료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이는 채용 사무실, 직원 게시판, 직업 소개소 대기실, 노동 조합 회관 및 기타 직원들이 모이는 곳에 눈에 잘 띄도록 고지해야 합니다. 고용자는 어떠한 시설이나 기관의 직원의 10% 이상이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정보를 적합한 언어로써 고지해야 합니다.